

「2022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」 장학금 신청 안내

2022. 1. 26.

2022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

서울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저소득층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, 지속적으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,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 체육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,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

1 추진목적

☐ 세부내용

- 우리시에 소속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초·중·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, 체육 복지를 증진시키고, 미래의 체육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
- 우수한 실력을 갖춘 체육 인재 지원·육성을 통해, 우리시의 경기력 향상과 소속감을 제고시키고,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 운동부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

2 세부 추진계획

☐ 세부내용

- 장 학 명 : 2022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
- 선발규모 : 116명(초등14명, 중등33명, 고등69명)
※ 위 인원은 접수자 지원율 및 학교체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- 신청기간 : 2022. 1. 26.(수) ~ 2. 11.(금)
- 장학금 지원기간 : 2022. 3. ~ 12월(10개월 간)
- 신청방법 : 개인, 각 학교 소속 신청자 본회 市회원종목단체 공문 제출
※ 각 市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 장학생 명단 취합 후 '서울특별시체육회'로 공문 제출
- 지원대상 : 서울시 초·중·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선수
※ 대한체육회 등록선수에 한함.
- 대상선발 : 본회 학교체육위원회 심의·선정(※`22.2.28(월) 예정)
- 내 용 : 저소득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

○ 월별 장학금액

(단위 : 명, 원, 개월)

구 분	선발인원	월별 장학금	연간 장학금	지원기간
초 등	14명	200,000원	2,000,000원	10개월
중 등	33명	300,000원	3,000,000원	10개월
고 등	69명	400,000원	4,000,000원	10개월

- 지급방법 : 2022. 3. ~ 12월 까지 매월 20일 경 대상자(학생) 개인 계좌로 온라인 송금
- 사업주체 : 서울특별시체육회

☐ 지원자격

- 신청대상 : 서울시 초·중·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선수
※ 대한체육회 등록선수에 한함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,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,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(중위소득 52% 이하), 조손 가족 및 이에 상응하는 학생선수
- 서울시 대표로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
- 장애, 중증질환자 가정, 다문화 가정, 새터민 가정 등 선수로 경기력이 우수한 자
- 긴급위기가정의 자녀(파산, 개인회생, 보호자 수감 등)
-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상 교육비 지원 대상 확인 가능자
- 전년도(`21년) 지원대상자 중 상기 조건을 갖춘 자 중 재 추천 가능

☐ 선발 제외자

- ① 2022년 2월 고교 졸업(예정)자
- ② 형제, 자매 선수(1가구 당 1명 지원) ※ 단, 선정 인원 부족 시 지원 검토 예정
- ③ 서울시 거주자이나 타 시·도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 인자
- ④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지원기간 중(최근 3년) 대회 출전 성적이 저조하거나 추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

☐ 지원중단

- ①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
- ② 학생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때
- ③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- ④ 학교장의 징계 처분(정학, 퇴학)을 받은 경우
- ⑤ 이중 지원자로 확인 시, 지원중단 및 회수
- ⑥ 해당 선수가 서울 이외의 타·시도로 전학할 경우
- ⑦ 해당 선수의 선수생활 중단 또는 경기력이 현저히 저하되고, 운동 의지가 떨어진 경우
- ⑧ 운동선수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 손상 시(학교폭력, 각종 비위행위 등)
 - ※ 장학생 활동에 불성실하거나, 부적격 사유 발생 시, 해당 학교장 및 시회원종목단체는 본회로 서면 통보
 - ※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예비 후보 대상에게 지원

☐ 장학생 관리

- 코로나-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 중,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진로 캠프를 개최하여, 학생들의 올바른 스포츠 정신 함양과 다양한 진로 방향을 제시(※ 선정 장학생 필수 참석)
 - ※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은 변경·취소될 수 있음
- 연말(12월 중)에 해당 선수의 전국(소년)체전과 각종 대회 출전결과 및 연간평가서(대회출전 사진첨부)를 제출하도록 하여 경기력 관리 및 추후 지원여부 검토

3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

□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2. 1. 26.(수) ~ 2. 11.(금)까지 ※ 기한업수
- 추천방법 : 신청자 ➡ 해당 市회원종목단체 ➡ 서울특별시체육회
- ※ 전자문서 : 수신자 지정 ➡ LDAP ➡ ‘서울특별시체육회’
- ※ **개인 및 각 학교에서 「서울특별시체육회」로 직접 신청 불가, 반드시 해당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**〈학교 또는 개인 : 해당 市회원종목 단체로 공문 발송〉

□ 추진일정

일 정	추진내용	비 고
2022.1.26.(수)	2022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 및 협조 요청	본회 ➡ 市교육청, 市회원종목단체
2022.1.26.(수)~2.11.(금)	장학생 추천 서류접수 및 마감	신청자➡ 市회원종목단체 ➡ 본회
2022.2.11.(금)~2.25.(금)	장학생 서류 검토 및 보완	본회
2022.2.28.(월) 예정	본회 학교체육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·선정	본회
2022.3.4.(금) 예정	장학생 선정자 안내	본회 ➡ 市교육청, 市회원종목단체
2022.3.~12월	월별 장학금 지원	본회 ➡ 장학생 선정자 ※ 매월 20일 경 지급

※ 상기 일정은 지원자 접수율 및 본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

장학생 선발방법

□ 세부 평가방법

- 평가방법 : 신청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량적 평가로 환산·채점
- 종합평가 점수(①~③) 고득점자 순위별 선발

① 가정환경<최대 : 40점>

(단위 : 점)

연 번	구 분		점 수	구비서류
1	기초생활수급자<40점>	기본<38점>	38점	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정부24> * 학생명의 발급
		생계급여<0.8점>	0.8점	
		의료급여<0.6점>	0.6점	
		주거급여<0.4점>	0.4점	
		교육급여<0.2점>	0.2점	
2	차상위계층<35점>		35점	①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<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> * 학생명의 발급
3	한부모가족<30점>		30점	①한부모가족 증명서 <정부24> * 학생명의 발급
4	교육비 지원 대상자<25점>		25점	①나이스(NEIS) 교육비 지원 확인서 <수강료, 급식비 등><소속 학교 발급>

※ 상위 분야에 모두 해당하여도, 해당 분야<1개> 최고 점수만 부여

② 가정환경 관련 및 기타 가산점<최대 : 48점>

(단위 : 점)

연 번	구 분	점 수	구비서류
1	다문화 가정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증
2	장애인 가정	4점	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3	중증질환자 가정	4점	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4	새터민(북한이탈자) 가정	4점	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5	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②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)
6	조부모 부양 가정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②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)
7	조부모 가정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②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)
8	긴급위기가정	1) 보호자 수감	4점 ① 수용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		2) 파산신청	4점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또는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
		3) 개인회생 가정	4점 ①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또는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
9	임대아파트 또는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월세 주거	4점	①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② 월세 계약서 ③ 가족관계증명서
10	학업 성적 우수자	4점	① 전학기 성적증명서

③ 경기실적<최대 : 12점>

(단위 : 점)

연 번	구 분	점 수	발급서류
1	`21년 국제대회, 국가대표 출전 또는 입상 5위 이내 입상	11점	중앙경기단체 경기실적증명서
2	`21년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	9점	중앙경기단체 경기실적증명서
3	`21년 서울시대회 3위 이내 입상	7점	市회원종목단체 경기실적증명서
4	`21년 경기력 가산점 (특점왕, 최우수선수, MVP등)	1점	중앙경기단체 경기실적증명서 市회원종목단체 경기실적증명서

※ 상위 분야에 모두 해당하여도, 해당 분야<1개> 최고 점수만 부여

※ 가산점 해당 시 점수 반영

☐ 동점자 처리 기준

○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

① 저소득(생계 ➡ 의료 ➡ 주거 ➡ 교육급여) ➡ ② 경기력 우수 선수
➡ ③ 저학년 ➡ ④ 학교운동부 ➡ ⑤ 클럽운동부

5 지원자 제출서류 안내

개인 제출서류 (신청자 ➡ 市회원종목단체)	추천단체 제출서류 (市회원종목단체 ➡ 서울특별시체육회)
[필수 제출서류] ①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신청서 <붙임1> *해당 회원종목단체장 직인 필 ② 2022 선수등록확인서<중앙경기단체 발행> *최근 1개월 이내, `22년 발급 불가 시 `21년 내용 제출 ③ 2021 경기실적증명서<중앙경기단체 발행> *최근 1개월 이내 ④ 학생선수 명의 통장사본 *부모 및 타인통장, 적금통장, 청약통장, 장기 미사용 정지통장 등 지급 불가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(붙임5) ⑥ 재학증명서, 입학예정 증명서 중 1부 [해당자 제출서류] ⑦ 가정환경 관련 서류 * 최근1개월 이내 ⑧ 가정환경 및 기타 가산점 관련 서류 * 최근1개월 이내	① ~ ⑧ “개인 제출서류 동일” ⑨ 장학생 추천 명단(공문 붙임 엑셀 서식)

□ 필수서류 세부 안내

- ①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(회원종목단체장 직인 필)
※ 초·중학교 2월 졸업(예정)자의 경우 진학하는 학교로 추천서 작성
- ② 2022년도 선수등록 확인서(해당 중앙경기단체) 1부
- ③ 2021년도 경기실적 증명서(해당 중앙경기단체) 1부
- ④ 본인 통장사본 1부(※ 부모 및 타인 계좌 불가, 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)

지급가능 은행

기업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SC제일은행, 한국씨티은행, Sh수협은행, NH농협은행, 단위농협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새마을금고, 신한협, 우체국, 상호저축은행, 산업은행, 카카오뱅크

※ 압금한도 초과, 거래 중지 계좌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요망

-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⑥ 재학증명서, 입학예정 증명서 중 1부

□ 해당자 제출서류 세부 안내

⑦ 가정환경 관련

-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계층, ③ 한부모가족, ④ 교육비 지원 대상자

⑧ 가정환경 및 기타 가산점 관련

- ① 다문화가정, ② 장애인가정, ③ 중증질환자가정, ④ 새터민가정, ⑤ 다자녀가정, ⑥ 조부모 부양 가정, ⑦ 조부모가정, ⑧ 긴급위기가정, ⑨ 임대아파트 또는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월세 주거 가정, ⑩ 학업 성적 우수자

□ 제출서류 유의사항(* 필독)

- 필수 제출서류(①~⑥) 미제출시 선정 제외
- 해당자 제출서류(⑦~⑧) 미제출시 관련 내용 불인정
- 제출서류 원본은 추천 市회원종목단체에서 보관
- 「붙임13」 참조하여, 공문 본문에 연번, 종별, 소속, 학년, 종목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기재하여 전자문서 발송

※ 수신처 : ‘서울특별시체육회’ 지정

- 市회원종목단체는 공문 발송 후 유선(☎ 02-490-2746) 확인 필수
- 市회원종목단체는 공문 용량 초과 시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
- 서울특별시체육회 담당자<athleticman@seoulsports.or.kr>
- 장학생 신청자 제출서류는 개인별 PDF 문서(①~⑧번, 번호순)로 1개의 파일로 저장 후, 전체 추천 대상자 폴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
* 파일 스캔 순서는 반드시 번호순으로 작성

예) : 1.초_한국초_5학년_축구_홍길동_남 * 엑셀 순서도 동일하게 기재

- 학교 및 클럽으로 소속된 선수들은 「붙임14」 연락처를 참고하여, 해당 종목별 市회원종목단체로 신청서 제출
- 장학생 추천명단 작성 유의사항
 - 기초정보, 입상실적 등을 정확히 기재
 - 대회실적은 2021년 1월 이후부터 추천마감일<2022.2.11.> 내 개최 대회만 해당하며, 대회명 앞에 반드시 개최년도를 기재
- 예)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[○], 제102회 전국체육대회[×]
 - 대회실적 기재 시, 대회 일정별(내림차순) 순으로 기재
 - 추천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간주
 - 기타 작성 요청 내용 추천양식 내 메모사항 확인 후 작성
- 회원종목단체 미등록 학생 및 미승인 학생선수는 본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
- 예산 및 추천대상자 현황을 고려하여 최종 장학생 선정 인원은 기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
- 장학금 대리수령(대리인 계좌) 불가
- 선수등록 확인서 2022년 발행 불가 시, 2021년도 선수등록 확인서, 제출 후, 추후 2022년도 자료 제출

6 기타사항 안내

☐ 중위소득 기준

기준 중위 소득이란?

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“**최저 생계비**”에 해당하는 개념으로, 보건복지부 장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**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**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.

중위소득의 50% 미만은 빈곤층, 50~150%는 중산층, 150%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함.

☐ 대상별 소득수준 기준

구 분	대 상	비 고
기초생활수급자 (중위 50% 이하)	▶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,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▶ 생계급여(중위 30%), 의료급여(중위 40%), 주거급여(중위 46%), 교육급여(중위 50%) ■ 부모(계부모 포함), 자녀(사위, 며느리 포함)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■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(이혼, 폭력, 학대)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·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■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, 교도소 수감, 해외이주, 행방불명 등인 경우	수급자증명서 (기초생활수급자) (주민센터, 정부24 발급)
차상위계층 (중위 50% 이하)	▶ 중위소득 50%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 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 ▶ 생계급여(중위 30%), 의료급여(중위 40%), 주거급여(중위 46%), 교육급여(중위 50%)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(차상위계층) (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, 정부24 발급)
한부모가정 (중위 52~60%)	- 중위소득 52~60% 이내의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의 가정, 조손 가정(사별, 이혼, 미혼모, 미혼부, 장기간 무단가출 등 포함)	한부모가족 증명서 (주민센터, 정부24 발급)

교육비 지원 대상자	- 주민센터 발급 증명서 제출 불가 시 교육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가능자(수업료, 방과후수강권, 급식비 면제 등) ※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(NEIS) 상 교육비 지원 여부 확인 가능	교육비 지원대상 확인서 (소속 학교 발급)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금액 (원/월)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
*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 시 마다 **873,588원씩 증가**(8인 가구 : 8,654,180원)

*[시행 2022.1.1.]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11호(2021.8.5.,제정)

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(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가구규모					
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교육급여 (50%)	972,406	1,630,043	2,097,351	2,560,540	3,012,258	3,453,502
주거급여 (46%)	894,614	1,499,639	1,929,562	2,355,697	2,771,277	3,177,222
의료급여 (40%)	777,925	1,304,034	1,677,880	2,048,432	2,409,806	2,762,802
생계급여 (30%)	583,444	978,026	1,258,410	1,536,324	1,807,355	2,072,101